

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	:	2011. 2. 1.
개 정	:	2012. 1. 1.
개 정	:	2012. 6. 1.
개 정	:	2022. 3. 31.
개 정	:	2022. 12. 27.
개 정	:	2025. 8. 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금강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학칙 6장에 의거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. 단,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/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위원의 경우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3. 31.>

1. 교직원 4명
2. 학 생 3명
3. 외부인사(전문가) 2명

제3조(위원) ① 교수를 대표하는 위원은 행정부서 보직교수 중 총장이 선임한다.

- ②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행정부서 팀장 중 총장이 선임한다.
- ③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총학생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선임한다.
- ④ 관련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

제6조(회의소집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위원 4/10 이상의 위원이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<개정 2022. 3. 31.>
-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,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2. 3. 31.>

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3. 31.>

제7조(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심의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해당 연도 적정 입학금·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제2조(구성), 제3조(위원), 제4조(위원장), 제5조(임기)에 대한 변경 사항 <개정 2022. 3. 31.>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신설 2022. 3. 31.>

제9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① 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업무처리)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